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안전정책팀(제품안전정책과) 공업연구사 오기수
509-7237 bruceoh@mocie.go.kr

1. 추진배경 및 2005년 추진실적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확대되어 가면서 다른 선진국의 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듯이 안전, 보건, 환경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는 상승되어 가고 있으나, 이에 반해 웰빙 붐 등의 사회적인 트렌드에 편승하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제조 · 유통이 급속히 확산되고, 외국으로부터 저질 · 저가의 불량 제품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이들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공산품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표준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 · 연구하여,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인체에 가해지는 위해정도가 큰 정도에 따라 공산품 안전인증제도, 자율안전확인제도(제조자가 스스로 자기 제품의 안전성을 선언), 안전 · 품질표시제도로 제품의 안전관리를 차별화하도록「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2005년 12월에 법률을 개정 · 공포하였다.

또한, 1999년「통관절차 간소화 정책」에 의해 "세관장 확인물품"에서 제외된 안전관리대상공산품 중 어린이용 제품(18개 품목)을 재 지정, 고시되도록 추진하여 저가 · 불량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가정용 화학제품인 방향제, 워셔액, 세정제 등을 어린이가 음용하여 발생되는 중독사고 등의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어린이 보호포장」의무화제도를 도입하여 2005년 10월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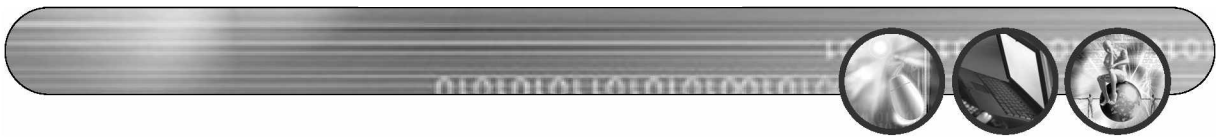

<공산품안전관리제도 변경 전후대비표>

기 존	변 경	비 고
안전검사(의무)	안전인증(의무)	* 제품검사 →'제품검사+공장심사
안전검정(임의)	자율안전확인(임의+의무)	*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신고
품질표시(임의)	안전 · 품질표시(의무)	* 표시사항 의무
-	법정외 품목 조치(신설)	* 위해제품 발견시 경보발령

2. 2006년 추진 현황 및 계획

2005년 12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공포됨에 따라, 2006년 12월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안전인증제도, 자율안전확인제도, 안전 · 품질표시제도의 세부사항을 빠짐없이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 · 시행규칙 초안을 4월에 마련하여 수정 · 보완중에 있으며, 기존의 안전관리품목을 전면 재검토하여 새로 도입되는 제도별 대상품목을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면서 위해의 정도, 사고발생 빈도, 유해물질 함유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관계부처 · 업계 ·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을 5월에 개최하였다.

앞으로,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관계부처 협의(6월), 입법예고(7월), 법제처 심사의뢰(8월), 국무회의 상정(10월) 등의 쉴 틈없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어, 목표시한 내에 법령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다행히도 6월에 예정되어 있는 기술표준원 조직개편 시 제품안전정책부가 신설되면서 인력이 보강될 계획이므로 목표달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술표준원에서는 이 밖에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통합메뉴얼 마련, 안전관리 품목 조정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의체 운영, 온라인 안전정보망 운영을 통한 정보우위의 안전관리기법 개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안전모니터링 제도 운영 등의 안전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에게는 보다 안전한 삶을, 기업에게는 경쟁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